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6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32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6. 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가. 제안이유

-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신설
- 2)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
- 3) 기금별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례의 미비점 등 반영

나. 주요내용

- 1) 고향사랑기금 관련 조문 제30조 신설
- 2) [별표]기금별 존속기한 중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 9. 26.로 5년 연장
- 3) 상위법 개정조항 반영 및 맞춤법 등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고,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3년 9월 26일에서 2028년 9월 26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489호, 2021.10.19. 공포, 2023.1.1. 시행)이 제정 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2023년 4월 26일, 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고향에 대한 건강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지급(법 제9조제2항),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법 제11조제3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법 제11조1) 및 조례 제13조2)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임.

1)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13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2013년 9월 26일 설치 된 **기후변화기금**³⁾은 구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후변화기금은 법정이 아닌 임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3항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 고향사랑기금 신설 및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

3) 제26조(기후변화기금) ① 구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가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한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0.12.31.)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4. 그 밖의 잡수입 등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위한 지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개정 2020.12.31.)
5. 민간단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본조신설 2013.9.26]

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변경]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6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33호)
- 나. 회부일자: 2023. 5. 25.
- 다. 상정일자: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6. 5.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기존 1,825㎡→2,415㎡, 증32%) 증가되어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기확보된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토지를 정형화하고 내실있는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 후,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후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성북구 장위동 65-154(211㎡), 65-190(207㎡) 부지 2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⁵⁾,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⁶⁾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기존 1,825㎡→2,415㎡, 증 32%) 증가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개요

4)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5)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위치 : 성북구 장위동 65-154 외 3필지
- 규모 : 부지면적 2,415㎡(731.18평), 연면적 8,449㎡(2,560.30평, 지하3층/지상4층)
- 사업기간 : 2020 ~ 2027
- 사업내용 :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교육 등 복합문화예술시설 건립
- 총사업비 : 477억5,400만원(시 202억7,500만원/ 구 274억7,900만원)
- 공간구성 : 공연장 600석, 세미나실, 연습실, 휴게공간, 주차장 85대

○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변경계획

- 기존부지 : 장위동 65-154(1,825㎡, 553.03평), 현재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중
- 추가매입 : 장위동 65-190(211㎡, 63.94평, 사유지),
65-148(207㎡, 62.73평, 사유지)
- 재산관리관 변경 : 장위동 65-159(172㎡, 52.12평, 구유지) 현재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중
- 공유재산 변경 내역 : 1,825㎡→2,415㎡,
80억 5,706만원 → 103억4,000만원

○ 부지매입계획

- 장위동 65-190 : 11억7,000만원
- 장위동 65-148 : 11억4,000만원
- 재원조달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 계약방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산술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 추진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확보된 성북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에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토지를 정형화 하고 내실있는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건립부지는 협소하여 최대 500석 규모로 조정 가능한 상황으로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해 600석 이상 규모(서울시 자치구 문예회관 평균 객석수 694석)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6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2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132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6. 23. 상정 ·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가. 제안이유

○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2)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4)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5)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6) 영업자의 협조에 대한 사항(안 제7조)

7)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조례안은 성북구 관내 **착한가격업소**⁷⁾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출 된 것으로,
-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기준**⁹⁾·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 맞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음.

7) **착한가격업소** :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속에서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행정자치부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8)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기준** : 평점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유지

- 착한메뉴 비중(25), 가격수준(30), 이용만족도(20), 위생(20), 공공성(5)

- 우리구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17개를 지정하여 물품지원(대부분 쓰레기 봉투), 환경개선(인증표찰), 방역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구 상반기 예상 교부금은 1,612만원(국비 483만원, 시비 1,129만원)임.

○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현황(2023. 2월 현재)

구분	22상	계	외 식 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기타 외식	소계	세탁업	이·미 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
계	844	834	523	420	8	40	10	45	311	49	241	4	1	16
종로구	21	19	9	6			1	2	10		8		1	1
중 구	14	13	10	9		1			3	1	2			
용산구	20	20	19	14	2	1	1	1	1		1			
성동구	18	16	7	6		1			9	3	6			
광진구	43	48	22	14		2	1	5	26	5	20	1		
동대문	13	18	14	13		1			4		4			
종량구	32	34	16	11		4		1	18	1	14	1		2
성북구	18	17	14	13			1		3	1	2			
강북구	21	20	8	7				1	12	3	8	1		
도봉구	46	46	29	19		5		5	17		16			1
노원구	20	18	9	7		2			9	2	7			
은평구	20	25	18	16	1			1	7	1	6			
서대문	42	44	26	22		2		2	18		17			1
마포구	49	50	25	19	1	1		4	25	2	22			1
양천구	24	24	10	7		3			14	2	11			1
강서구	27	24	9	8		1			15	1	13	1		
구로구	59	53	28	24		2		2	25	4	17			4
금천구	39	39	21	18		2		1	18	7	8			3
영등포	23	23	15	12	1	2			8	1	7			
동작구	94	87	61	52	1	2	1	5	26	9	17			
관악구	49	48	33	25	1	1		6	15	2	12			1
서초구	8	13	13	10			3							
강남구	83	76	73	59	1	3	1	9	3		3			
송파구	47	44	25	20		4	1		19	4	15			
강동구	14	15	9	9					6		5			1

○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목적)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을 명시
- 안 제2조(정의) :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지정 및 취소)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함.
- 안 제4조(이용 활성화) :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규정
- 안 제5조(지원) :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한 소모품 지급, 홍보,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
- 안 제7조(영업자의 협조) :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함.

- 안 제8조(포상) :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물가상승 속에서도 지역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안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음.

○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큰 효과가 없었으며¹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는 2015년 이후 업데이트된 자료가 없는 등 활동이 거의 중지된 상태임.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외식업계와 개인서비스업계에도 반영되어 운영경비 상승에 따라 착한가게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며, 착한가게 지정 후 홍보 효과가 없는 등 인지도가 낮아 구민이 잘 몰라 이용이 거의 없었으나, 행정안전부와 시에서 적극적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조례 제정에 따른 시도별 국비교부율을 받

10) 지정현황 : 2011년 가격이 저렴한 업소 2,497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했고, 2012년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통한 제도의 홍보를 통해 6,576개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2015년 12월 31일 현재 6,53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기준, 위생기준, 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서비스업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092개, 부산 525개, 대구 375개, 인천 351개, 광주 342개, 대전 356개, 울산 99개, 세종 26개, 경기 964개, 강원 347개, 충북 319개, 충남 332개, 전북 353개, 전남 357개, 경북 513개, 경남 342개, 제주 138개가 지정되어 있다.

영 할 예정이며, 조례를 제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자구수정(조문내용변경)

나. 수정내용

제1조 “물가안정” 을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으로, “이바지함” 을 “기여하는 것” 등으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자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4
----------	--------

제안 연월일: 2023년 6월 26일

제안 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 자구수정(조문내용변경)

2. 주요내용

제1조 “물가안정” 을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으로, “이바지함” 을 “기여하는 것” 등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기타사항: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가안정”을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으로, “이바지함”을 “기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을 ““착한가격업소”란”으로, “개인 서비스”를 “개인서비스”로, “일정 기준”을 “일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를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착한가격업소에 대한”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예산의 범위에서”를 “착한가격업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착한가격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

2호 중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 을 “위생수준 향상 을 위한 소모품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 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위하여” 를 “위해” 로 한다.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제7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 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내 소</u> <u>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u> <u>고, 지역물가안정</u> ---- <u>기여하</u> <u>는 것</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 용업, 세탁업 등 <u>개인 서비스</u>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u>일정 기준</u> 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 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 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착한가격업 소”란 ----- ----- ----- <u>개인서비</u> <u>스</u> ----- ----- ----- ----- <u>일정기준</u> ----	
<신 설>		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신 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 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 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제4조(지정 및 취소)	----- -----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신 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 착한가격업소에 -----.

1. <u>착한가격업소</u>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u>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급</u> <신 설> 3.·4. (생략) <신 설>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략)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u>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u> <신 설> 제8조(포상) <u>구청장은 착한가격</u>	1. <u>“착한가격업소”</u> ----- ----- 2. ----- <u>위생수준</u> <u>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u> 3. <u>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u>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6. <u>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u> 7. ----- --- <u>위해</u> ----- -----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9조(영업자의 협조) ----- ----- ----- ----- <u>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u> -----. 제10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7조(포상) <u>구청장은 착한가격</u>
---	--

<u>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u>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u>
--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6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19. 양순임 의원 외 14명 발의(의안번호 138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6. 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동물복지에 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및 요구 수준을 조례명 및 조문에 반영하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022. 4. 26.) 및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
- 2) 반려동물의 정의를 법에 따른 정의로 변경(안 제2조제2호)
- 3) 동물복지시행계획에 동물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제1호)
- 4) 저소득층 반려동물 동물복지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안 제17조

제3항 신설)

- 5)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법 개정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명칭 변경(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높아진 사회적 관심 및 요구 수준을 조례명 및 조문에 반영하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2022. 4. 26.) 및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명의 변경

- 동물을 일방적인 보호대상이 아닌 “반려”라는 동반자적 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사항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개정 2022. 4. 26. 시행 2023. 4. 27.)

- 동물보호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였음.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 제2조제2호 : 정의를 ‘ “반려동물” 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로 개정
- 제2조제4호 : 법 제2조제2호 → 법 제2조제8호
- 제2조제7호 : 법 제15조 → 법 제35조, 법 제36조
- 제4조제2항제1호 : 확산 → 동물복지 향상
- 제8조제1항 : 법 제15조제1항 → 법 제35조,
법 제15조제4항 → 법 제36조
- 제9조제2항 : 법 제15조제7항 → 법 제36조제4항
- 제10조제1항 : 법 제14조 → 법 제34조
- 제10조제4항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제11조제3항 : 법 제21조 또는 제22조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제12조제1항 : 법 제14조제1항제3호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제12조제2항 : 법 제21조 → 법 제45조
- 제12조제3항 : 법 제20조 → 법 제43조,
법 제21조 또는 제22조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제14조제1항 : 법 제39조 → 법 제86조
법 제32조제1항 → 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

- 제14조제3항 : 법 제45조 → 법 제94조

- 제18조제1항 : 법 제41조 → 법 제90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명예동물보호관

▪ 저소득층 반려동물 동물복지에 관한 지원 사항 신설 (안 제17조제3항) :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복지 지원을 위해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동물을 일방적인 보호대상이 아닌 “반려”라는 동반자적 개념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6일(월)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5. 19. 정윤주 의원 외 7명 발의
(의안번호 139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2023. 6. 8.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윤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의 편성부터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까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확대를 제안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임기 확대(안 제10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제1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불필요한 후단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11)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원회의 임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서울 25개 구청 중 서대문구(1년,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 성

11)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북구, 용산구(1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 등 3개 구만이 임기가 1년이며 나머지 22개 구청은 2년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중구는 2년, 계속 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2조¹²⁾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 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의 기능을 수행함.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 되어진 사업은 해당 년도가 아닌 다음 해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시행되져 1년의 임기로는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까지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제1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불필요한 후단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5항¹³⁾에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

12)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13)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위원의 임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서울 25개 구청 중 서대문구(1년,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 성북구, 용산구(1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 등 3개 구만이 임기가 1년이며 나머지 22개 구청은 2년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중구는 2년, 계속 연임 가능)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12조¹⁴⁾에 따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4)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 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의 기능을 수행함.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 되어진 사업은 해당 년도가 아닌 다음 해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시행되져 1년의 임기로는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까지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